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_상환청구권 없음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 <생략> 추가약정서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 제 1 조~제 9 조 <생략> 제 10 조 (기한연장)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<u>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내에서</u>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1 ~ 3 <생략> 제 11 조 <생략>	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 <좌동> 추가약정서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 제 1 조~제 9 조 <좌동> 제 10 조 (기한연장)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<u><삭제></u>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1 ~ 3 <좌동> 제 11 조 <좌동>	- 최장기간 조항 삭제
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<생략>	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<좌동>	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1월 06일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